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

제 17조 . 이용료 및 변경, 절차

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(보호자)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,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,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(보호자)에게 통보 한다.

제 18조 . 이용료 및 비용 변경

① 월 이용료(본인부담금) 계산방법

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× 이용회수 × 이용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

▷ 본인부담금 계산법(재가급여)

구 분	이용자격별 본인부담비율
일반	0% 감경
기초수급권자	100% 감경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40% 감경
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0% 감경

(월 서비스이용 총액 × 이용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)

② 서비스 비용 수납 및 정산

-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문자로 통보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.
-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농협 301-0340-4087-11 다온케어복지센터으로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.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- 계좌이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현금으로 납부한다.
- 서비스 비용 납부 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.
- 센터에서는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(별지 제4호서식)를 발급한다.

③ 서비스 비용 변경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